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('23.11 20. 시행 예정)으로 약제에 대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 방식을 정하고, 대학의 교원이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,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재산보험료에 대한 주택부채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시 전입일 요건을 삭제하고,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체납·결손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절차를 정비하며,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,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아동의 범위를 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(안 제29조의2)

개정 「국민건강보험법」('23.11 20. 시행 예정)의 위임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원의 겸직 허가 신청 및 소속대학 총장의 겸직 허가 통보, 해당 교원의 교수시간 감면 등 겸직

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나. 지역가입자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(안 제42조의2제1항)

주택 구입에 따른 부채 공제 시 전입일 요건을 삭제하고, 소유권 취득
일 이후 30일 내 체결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부채공제를 적용함
으로써,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통해 재산보험료 부담
을 경감할 수 있게 함

다. 건강보험 체납·결손처분 자료제공 절차 정비(안 제47조의2)

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단에 대한 체납·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요구
절차를 삭제하는 등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('23.11 20. 시행 예정)에
따른 절차 정비

라.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(안 제71조제1항)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
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15%에서 65%로 확대

마. 약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 방식 규정(안 제74조의3)

「국세징수법 시행령」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
이자 산정

바.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인하(별표 2 제3호가목)

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%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
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 진행 중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진행 중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)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

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을 겸하고자 할 경우, 소속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대학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교원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교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은 해당 교원의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의 교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42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“날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(외국인의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

변경신고일,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하며, 이하 “전입일등”이라 한다)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(해당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전후 3개월) 이내일 것”을 “날의 전후 3개월 이내일 것”으로 한다. 제4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“전입일등”을 “전입일(외국인의 경우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,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제47조 중 “제81조의2”를 “제81조의3”으로 한다.

제4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”을 “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이하 “신용정보집중기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15”를 “65”로 한다.

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4조의3(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) 법 제101조의2의 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「국

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
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

1.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
: 조정등의 효력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
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법 제101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
2.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
: 조정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인용(일
부인용을 포함한다)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
하여 법 제101조의2제4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

별표 2 제3호가목 본문 중 “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
의 50”을 “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0에 입원
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목 2) 중 “「모
자보건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”를 “2세 미만의 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1조 및
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9조의2의 개
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임명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부
터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전에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4조, 「사립학교법」 제55조제1항 또는 학칙에 따라 소속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2를 적용한다.

제3조(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 제3호가목 2)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입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29조의2(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) ① 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 료심사평가위원회(이하 이 조에 서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 원을 겸하고자 할 경우, 소속대 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교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대학 총장으로부터 겸 직 허가를 받은 교원을 심사위 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 다.</u> <u>③ 제2항에 따라 교원이 심사위원 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조에 도 불구하고 소속대학 총장은 해당 교원의 교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이외에 대학의 교원이</u>

제42조의2(주택 관련 대출금액의
보험료부과점수 제외) ① 법 제
72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”란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.

1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
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
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
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
역가입자(이하 “1세대1주택
자”라 한다)

가. (생 략)

나.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
여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등
(주택담보전환대출은 제외
한다)을 받은 날이 주택 소
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
등록표 등본의 전입일(외
국인의 경우에는 「출입국
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
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
는 변경신고일, 「재외동

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기 위
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
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42조의2(주택 관련 대출금액의
보험료부과점수 제외) ① ----

-----.

1. 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

----- 날의 전후 3개
월 이내일 것

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하며, 이하 “전입일등”이라 한다)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(해당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전후 3개월) 이내일 것

2. (생략)

가. (생략)

나.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(보증금담보 전환대출은 제외한다)을 받은 날이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(임대차계약을 변경·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, 연장일 또는

2. (현행과 같음)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-----

----- 전입
일(외국인의 경우에는 「출
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
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
또는 변경신고일, 「재외
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

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
말한다) 이내일 것

② ~ ⑤ (생략)

제47조의2(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
료의 제공절차) ① 「신용정보
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
정보집중기관(이하 “신용정보
집중기관”이라 한다)은 법 제81
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
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
사항·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
에 관한 자료(이하 “체납등 자
료”라 한다)를 공단에 요구하려
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
문서로 하여야 한다.

1.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및
주소

2.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
용 및 용도

② 공단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
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
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
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

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
신고일을 말한다) ----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7조의2(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
료의 제공절차) <삭 제>

① ----- 법 제81조의3제1항에
따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
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
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

여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(자기 테이프, 자기디스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채납등 자료가 기록·보관된 것을 말한다)로 제공할 수 있다.

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채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채납액의 납부,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채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납등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.

제71조(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)

① 법 제99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

(이하 “신용정보집중기관”이라 한다)-----

② ----- 제1항-----

③ ----- 제2항-----

제71조(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)

① -----

같다.

1.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
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
는 자금 지원: 과징금 수입의
100분의 50

2. (생략)

3.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
법률」에 따른 재난적의료비
지원사업에 대한 지원: 과징금
수입의 100분의 15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<삭제>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65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4조의3(약제에 대한 쟁송 시
가산금 산정) 법 제101조의2의
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이자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
에 따른 금액에 「국세기본법
시행령」 제43조의3제2항본문
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
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
말한다.

1. 법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
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
하는 경우 : 조정등의 효력이
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
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정지된
기간에 대하여 법 제101조의2

	<u>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</u> <u>2. 법 제101조의2제2항에 따라</u> <u>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</u> <u>하는 경우 : 조정등의 효력이</u> <u>발생한 날부터 행정심판이나</u> <u>행정소송에 인용(일부인용을</u> <u>포함한다) 재결 또는 판결이</u> <u>확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</u> <u>하여 법 제101조의2제4항에</u> <u>따라 산정되는 금액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702